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이은미 의원이 발의하고, 2022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근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정 권고(2022.5.4.)를 따른 것으로 평창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 노력

(안 제3조~제4조)

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다. 인권교육 증진 활동 지원 사항 및 인권지수 개발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인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그 방안을 모색 및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지역의 인권 행정에 관한 관심과

제도화 수준이 낮은 편이며, 유기적인 인권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원도 내 인권조례는 5곳(춘천, 태백, 영월, 동해, 원주)이며,
제정률 27.8%(전국 42%)임.

○ 검토 결과,

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